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8
----------	--------

제출연월일: 2024년 1월 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공동위원장 구성)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역할 및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6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은 구청장,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2. 6. ~ 2023. 12. 26.) 결과: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결과: 원안 동의
- 3)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결과: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결과: 개선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서구”를 “강서구 민·관합동”으로 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1항) 중 “위  
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을 “부위원장 2명  
은 위촉직”으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 명칭 및 기능) ①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u>강서구</u>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 <u>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제6조(위원회 명칭 및 기능) ① - ----- <u>강서구 민·관합동</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u>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u></p> <p>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 ----- ----- -----.</p> <p>⑤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③ <u>부위원장 2명은 위촉직</u> ---- ----- <u>선출한다.</u></p>

④ ~ ⑥ (생략)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 4. 작성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담당: 행정8급 김예지 / ☎ 2600-1739)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3-36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정용훈
입안주무부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조치일		2023. 12. 8.	
관련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조례 일부개정안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원안동의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안이유

-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직속(공동위원장 구성)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역할 및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6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은 구청장,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하게 이행하고자 기존 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공동위원장 구성)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로의 개편을 통해 위원회 역할 및 민·관 협력 체계 강화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서울강서033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담당자명	김예지	전화번호 02-2600-173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2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청장직속(공동위원장 구성)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로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역할 및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귀하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